

발행인 : 서울특별시장 구 자 춘

편집 : 문화공보실장 조 용 하

전화 75 - 7834

인쇄 : 서울특별시종합발간실

전화 75 - 6090

제 577 호

1976.10.18

시 보

차 례

◎ 조 례

제 1067 호 : 서울특별시중학교무시험 입학추첨 방법 과학교군 및
중학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 3

제 1068 호 : 서울특별시고등학교학군설정에 관한 조례중
개정조례 4

제 1069 호 : 서울특별시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환지지시 측량
대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 4

◎ 고 시

제 263 호 : 주택개량을 위한 재개발 사업관리 처분계획인가 및
예정지 지정 고시 6

제 264 호 : 동청사 위치변경 7

제 265 호 : 도시계획사업 (도로) 실시계획인가 7

제 266 호 :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시행허가 8

제 267 호 : 도시계획시설 (지하도)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 9

<이면계속>

1.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.

2.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서울특별시

1000

1976

261

제 268 호 : 도시 계획시설 (도로) 지적임부변경승인	10
제 269 호 : 주택 개량을위 한재개발사업관리처분계획인 가및 환지에 정지 지정 고시	10
제 270 호 : 도시 계획시설 (주차장) 결정 및 지적승인	11
◎ 공 고	
제 242 호 : 도시 계획시설 (도로) 실시 계획공람공고	11
제 243 호 : 토지구획정리 사업 계획 일부 변경 공람공고 (시흥지구)	13
제 244 호 : 환지 계획 변경 인가 및 예 정지 지정 공고	14
제 245 호 : 도시 계획시설 (도로) 실시 계획공람공고	14
제 246 호 : 도시 계획시설 (도로) 실시 계획공람공고	16
제 247 호 : 도시 계획시설 (도로) 실시 계획공람공고	17
제 250 호 :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수출품생산지검업체지정 및 취소공고	18
제 251 호 : 도시 계획시설 (도로) 실시 계획공람공고	18
제 252 호 : 주택 개량재개발사업건축 계획공람공고	23
제 40 호 (강남구 공고) : 청사이전공고	23
◎ 예 규	
제 337 호 : 서울특별시 체비지 관리 및 처분 규정 중 개정 규정	23
◎ 사 령	25

조 례

◎ 서울특별시조례제 1067 호

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중학교 무시험입학추첨 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1976. 10. 19

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교육감 하점생 인

서울특별시중학교무시험입학추첨 방법과학교군및중학구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

서울특별시 중학교 무시험입학 추

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- 제 3 조 (학교군) ①학교군 및 중학구 수는 10 학군과 1 학구로 하고, 학교군 . 중학구별 국민학교 및 중학교는 별표와 같다.
- ②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1977 학년도 개시일 부터 시행한다.

< 별 표 >

1. 학교 변경 중학교

학 교 명	현 학 군	변 경 학 군	비 고
신 천 중	3 학 군	4 학 군	

2. 추가 중학교

학 교 명	학 군	비 고
진 선 여 중	5 학 군	
양 석 여 중	4 학 군	

◎ 서울특별시 조례 제 1068 호

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학군설정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1976. 10. 19

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교육감 하점생 인

서울특별시 고등학교 학군설정에 관한
조 례 중 개 정 조 례

서울특별시 고등학교 학군설정에
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2 조 (학 군) ① 학 군 은 후 기 학 교 의
분 포 와 지 역 적 여 전 을 감 안 하 여
" 1 개 의 공 동 학 군 과 7 개 의 일 반
학 군 " 을 둔 다.

② 학 군 별 고 등 학 교 와 그 에 속 하 는
중 학 교 는 별 표 와 같 다.

부 칙

이 조례는 1977 학년도 개시일 부
터 시행한다.

< 별 표 >

1. 학 군 변경 고등학교

가. 남 자

학 교 명	현 학 군	변 경 학 군	비 고
경 동 고	공 동 학 군	1, 2 학 군	
배 명 고	"	2, 3 "	
성 동 고	"	2, 3 "	
송 문 고	"	5 "	
이 대 부 고	"	5 "	
장 충 고	"	3 "	
홍 익 고	"	1 "	
오 산 고	3, 4 학 군	4 "	
관 약 고	4 "	7 "	
성 남 고	4 "	7 "	
여 의 도 고	4, 5 "	7 "	
장 훈 고	4 "	7 "	

나. 여 자			
학 교 명	현 학 군	변경 학군	비 고
금란여고	공동학군	5 학군	
보성여고	"	4 학군	
서울여고	"	5, 7 "	
상명사대부여고	"	1, 6 "	
신광여고	"	4, 7 "	
이대부여고	"	5 "	
상명여고	4 학군	4, 7 "	
영등포여고	4 "	7 "	
빙지여고	5, 6 "	6 "	
2. 고등학교 학군소속 변경중학교			
학 교 명	현소속고교학군	변경고교학군	비 고
남 자 여 자			
장훈봉영	} 4 학군	} 7 학군	
영도영등포			
당산한강			
동일문일			
강서동일			
유한강서			
공향화서			
여의도오류			
	여의도	여의도	
	대림		
3. 추가 고등학교			
학 교 명	학 군	비 고	
진선여고	3 학군		

4. 추가 중학교		
고 교 학 군	교 명	비 고
3 학 군	진 선 여 중	
3 학 군	양 석 여 중	
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환지지시 측량대행에 관한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 서울특별시장 구자춘 인 1976년 10월 18일		서울특별시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환지지시 측량대행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환지지시 측량대행에 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.
환지지시 측량대행수수료		
구 분	수 수 료 액	비 고
1 - 20 필지 까지	필지당 4,000원	1필지의 면적은 300평을 기준하고, 300평초과시마다 기준수수료액의 10%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가산한다.
21-50 필지까지의 20필지초과분	" 1,500원	
50 필지초과분	" 800원	
부 칙	주택개발을위한재개발사업관리처분 계획인가및예정지지정고시 1. 서울특별시 고시제 224호(76.9.11)로 관리처분 계획공람한바 있는 아현제2구역 일부, 옥수5구역 일부 및 미아3구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제 41조, 제 86조 및 토지구획정리 사업법	
①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 ② 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당시 대행업자에게 신청되어있는 사안에 대한 측량수수료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	고 시	
◎ 서울특별시고시제 263 호		

제 56조와 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 25조에 따라 관리처분 계획을 인가하고 인가에 따른 예정지를 지정하였기를 지정 고시한다.

2. 관계도서는 주택국 주택개량과 및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고 관계인에게 열람하고 있으며

3. 본고시에 대한 서류송달은 토지 및 건물소유자에게 개별통지

할것이나 미수령자에게는 본고시로 대신함을 알린다.

1976.10. .

서울특별시장

◎서울특별시고시 제 264 호

동청사 위치 변경

다음과 같이 동청사의 위치가 변경되었기 고시한다.

1976.10.5

서울특별시장 구 자 훈

다 음

동 명	위 치 변 경 내 용		이전일자	비 고
	이 전 전	이 전 후		
강남구잠원동	강남구 잠원 동 134-28호	강남구 반포동 92-1-3부락	76.10.5	

◎서울특별시고시제 265 호

도시계획사업 (도로)

실시계획인가

1. 건설부고시제 8 호 (76.1.21) 로 고시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사업 (도로)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을 인가하였기 도시계획법

제 25 조와 동법 제 26 조 및 건설부고시 제 123 호 (73.4.4) 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함.

2. 관계도서는 총로구청 토목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.

1976.10. .

서울특별시장

1. 사업시행의위치 : 종로구도림지구 (세종로동, 도림동, 당주동)

2. 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도림지구 (세종로동 154의 2~당주동 128의 1간) 도로개설공사

3. 사업규모 :
B=15m L=171m (세종로동)
B=15m L=144m (당주동)

4. 사업시행자 : 서울특별시장

5. 착수 및 준공예정일 :
1976.9 -1977.12.31

6. 사용또는 수용할재산의 소재지 :
별첨

7.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
토지수용법 제 4조 3항의 규정
에 의한 관계인 주소성명 :
별첨 토지조서생략

◎ 서울특별시 고시 제 266 호

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시행허가
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 218 호 (76.9.6)로 결정 및 지적승인 고시된 도시계획사업 (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)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4

조 및 제 25조와 행정권한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 25조에 의하여 시행허가 하였기 이를 고시한다.
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토목과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.

1976.10.16

서울특별시장

1) 사업시행지 : 관악구 신림동 273의 154필

2) 사업의종류 : 일단의주택지조성 및 명칭 사업
동방생명단지

3) 시행면적 : 210,975㎡ (63,820평)

4) 시행자의 주소, 성명 : 시내 중구 태평로 2가 250번지 동방생명보험주식회사 대표 원종훈

5.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년월일 :

착공 : 76.10. .

준공 : 78.10.31.

6)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, 건물
의 소재지번, 지목 및 소유권
이외의 권리명세 (생략) 별첨

7)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
토지수용법 제 4조 제 3 항의
관계인 주소, 성명 (생략)

별 첨

8) 허가내용 : 별첨허가도서 (생략)

◎ 서울특별시고시제 267 호

도시계획시설 (지하도) 변경결정
및 지적 승인

1. 당시 관내 도시계획시설 (지하도)

을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하고
지적 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
12조 및 제 13 조와 행정권한
위임위탁에 관한 규정 제 25 조에
의거 다음과 같이 이를 고시한다.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
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
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
계인에게 보이게 한다.

1976.10.18

서울특별시장

가. 시설 (지하도) 변경결정조서

구분	시 설 명	위 치	규 모	면적 (㎡)	비고
기정	방산시장앞지하도	중구 방산동 4 - 11앞	25m x 36m	1,049.2	
변경	"	"	36 x 46.2	1,968.6	
기정	구내무부앞지하도	중구을지로 2가 197	10.2-25.4x72	1,490	
변경	"	"	20.2 x 75	1,868.3	

※별첨도면 표시와 같음 (도면생략)

◎서울특별시고시제 268 호

도시계획시설 (도로) 지적
일부 변경 승인

1. 건설부고시제 375호 (71.6.25) 로 시설결정 및 지적승인된 도시계획시설 (도로) 에 대하여 지적일부변경사유가 있어 변경승인 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3 조와

행정권한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 25 조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.
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.

1976.10.20

서울특별시장

가. 지적일부변경조서

구분	등급	유별	번호	폭원	연장	기 점	종 점	비 고
기정	중로	1 류	142	20	70	마포구구수동 57-3	마포구 장전동 150-10	시공선에 맞추어 변경
변경	중로	1 류	142	20	70	"	"	

※별첨 도면표시와 같음 (도면생략)

◎서울특별시고시제 269 호

주택개량을위한개발사업관리
처분계획인가및환지에정지지정고시

1. 서울특별시고시제 224 호 (76.9.11) 로 관리처분계획공람한바 있는 옥수 3 구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41 조 제 86 조 및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 56 조와 행정권한

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 25 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인가에 따른 환지에정지를 지정하였기 이를 지정고시한다.

2. 관계도서는 주택국 주택개량과 및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고 관계인에게 열람하고 있으며

3. 본 고시에 대한 서류송달은 토지 및 건물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게는 본 고시로 대신함을 알린다.

1976.10.21

서울특별시장

◎ 서울특별시고시제 270 호

도시계획시설(주차장) 결정 및 지적승인

1. 당시 관내 도시계획시설(주차장)을 다음과 같이 신설 결정 및 지적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과 건설부고시 제123호(73.4.4)의 권한 위임사항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.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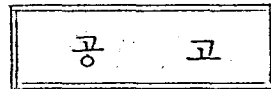
1976.10.21.

서울특별시장

가. 주차장 결정조서

위 치	면 적	비 고
영등포구목동 406-10	3,651㎡ (1.076 평)	중부우수

별첨: 도면표시와 같음. (도면생략)



◎ 서울특별시공고제 242 호

도시계획시설(도로) 실사계획공람공고

1. 건설부고시 제177호(62.12.8)로 고시된 용산제1·2유수지 주변정비공사 구간내의 저촉되는 토지의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고자 도시계획법 제25조 및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일반의 공람에 공한다.
2. 관계도서는 용산구청 토목과에 비치하고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.

1976.10.5

서울특별시장

<p><공 략 개 요></p> <p>1. 사업장위치 : 용산골다리~옥천간</p> <p>2. 사업의 종류와 명칭 : 용산제1·2 유수지 주변정비공사</p> <p>3. 사업의 규모 : B=20 m, L=300 m</p> <p>4. 사업의 시행자 : 서울특별시장</p>	<p>5. 사업착수및준공예정 : 1976.9.25 ~ 1977.12.31</p> <p>6.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: 별첨토지 조서</p> <p>7.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 수용법 제4조제3항의 관계인 주소·성명 : 다음</p>
---	--

토 지 조 서

순위	소재지	분할전표시			분할후표시			소유자	
		지번	지목	지적	지번	지목	지적	주소	성명
1	한강로3가	8	제 방	46.3	좌	동			국
2	"	8-1	철도용지	30		"			국
3	"	8-2	제 방	129.6		"			국
4	"	8-3	철도용지	25.1		"			국
5	"	12	구 거	600		"			국
6	"	6-3	철도용지	230.1		"			국
7	"	11	구 거	4		"			국
8	"	10	구 거	40		"			국
9	"	9	철도용지	54.6		"			국
10	한강로2가	17-4	유 지	49.7		"			국
	계			1,209.4					

건 물 조 서

순위	소재지	분할전표시			분할후표시			소유자	
		지번	구조	건평	지번	구조	건평	주소	성명
14	한강로 3가	40	목조세와	16.96				한강로 3가 40	김일동
	"	40-1	목조와즙	27.47				" 40-1	마홍규
16	"	8-2	"	27.30				" 8-2	황성인
17	"	40	"	10.66				" 40	황기종
18	"	40	"	38.00				"	김교완
19	"	40	"	17.11				"	김지완
20	"	40	"	9.33				"	서경모
21	"	40	목조세와	7.33				" 40-384	송울순
22	"	40-1	세부세와	10.00				" 40	김원갑
23	"	40	목조와즙	13.71				"	김송옥
24	"	40	"	12.00				"	김기영
25	"	40	"	17				"	이영보
	계			207.68					

◎ 서울특별 시공고제 243 호

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일부
변경공람공고(시흥지구)

1. 건설부공고 제 8 호 (68.1.23)로
실시계획 인가되어 당시가 시행하
고 있는 시흥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
에 대한 사업계획 일부를 다음과
같이 변경하고자 토지구획정리사업
계획 제 14 조 및 제 34 조 규정에

의하여 공고일로부터 14일간 공
람 공고한다.

2. 관계도서는 당시 도시정비국 구
획정리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
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
인에게 공람시키며, 시장 용지와
인접한 토지소유자에게는 별도 통
지할 것이나 통지를 받지 못한 토
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이
공고로서 갈음한다.

1976.10.18

서울특별시 도시정비국장

가. 사업 계획 변경조서					
지 구 명	위 치	면적(평)	변 경 내 용		비 고
			변 경 전	변 경 후	
시흥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	영등포구독산동110구획	824.10	시장용지	일반용지 (110-2)	
<p>첨부 : 관계도면 (생략 : 서울특별시 도시경비국 구획정리과 보관)</p>					
<p>◎ 서울특별 시공고 제 244 호</p> <p>환지 계획 변경인가 및 예정지 지정공고</p> <p>1. 서울특별 시공고 제 190 호 (76.8.18) 로 환지 계획 변경 공람공고 한 영동 (제 1 지구)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내 환지에정지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 55 조와 행정권한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 25 조제 11 항 3 호에 의거 환지 계획을 변경 인가하고 동법 제 56 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 예정지를 변경하였기 이를 공고 한다.</p> <p>2. 환지에정지 변경지정도서는 도시경비국 구획정리과와 강남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공람에 공한다.</p> <p>3.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</p>			<p>별도 공고사항을 서면 통지할 것이나,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한다.</p> <p>1976. 10. .</p> <p>서울특별 시장</p> <p><환지 계획 일부 변경인가 및 예정지 지정내역></p> <p>가. 사업 명 : 영동 (제 1 지구) 토지구획정리 사업</p> <p>나. 변경면적 : 53,970.8 평</p> <p>다. 변경위치 : 강남구반포동 269 번지의 필지 (2-38 구획, 310-317 구획, 320-332 구획)</p> <p>◎ 서울특별 시공고 제 245 호</p> <p>도시계획시설 (도로) 실시계획공람공고</p> <p>1. 건설부고시 제 581 호 (69.9.30) 로 고시된 청계천 (제 2 청계교 ~ 마장교 간) 제 4 차 복개공사 구간내의 저촉되는 토지의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고자 도시계획법 제 25 조 및 동법 제 34 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 일간 일반의 공람에 공한다.</p>		

<p>2. 관계도서는 성동구청 토목과에 비치하고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976. 10. 13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특별시</p> <p><공 략 개 요></p> <p>1. 사업장 위치 ::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동 청계천변</p> <p>2. 사업의 종류와 명칭 : 청계천 (제2청계교-마장교간) 복개 제4차공사</p>	<p>3. 사업의 규모 :</p> <p>가. B = 14.5 m</p> <p>나. L = 600 m</p> <p>4. 사업의 시행자 : 서울특별시</p> <p>5.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 : 76.10.30 ~ 77.12.31</p> <p>6.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: 별첨 토지조서</p> <p>7.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 제3항의 관계인 주소 설명 : 별첨</p>			
<p>1. 토지조서</p> <p>공사명 : 청계천 (제2청계교~마장교간) 복개 제4차공사</p>				
<p>순 위</p>	<p>위 치</p>	<p>치 적</p>	<p>지 목</p>	<p>소 유 자</p>
<p>1</p>	<p>성동구홍익동 596 번지</p>	<p>1,263.4</p>	<p>제 방</p>	<p>국 유 지</p>
<p>2</p>	<p>홍익동 612</p>	<p>4,577.6</p>	<p>하 천</p>	<p>"</p>
<p>3</p>	<p>홍익동 595</p>	<p>68.3</p>	<p>도 로</p>	<p>서울특별시</p>
<p>4</p>	<p>성동구마장동 610</p>	<p>237</p>	<p>하 천</p>	<p>국 유 지</p>
<p>5</p>	<p>마장동 527</p>		<p>제 방</p>	<p>"</p>
<p>2. 건물조서 : 해당없음.</p>				

◎ 서울특별 시공고제246 호

도시계획시설(도로) 실시계획공람공고

1. 건설부고시 제 8 호 (76.1.21) 로 고시된 소공동 가각정비 공사구간 내의 저촉되는 토지의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고자 도시계획법 제 25 조 및 동법 제 34 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 일간 일반의 공람에 공한다.
2. 관계도서는 중구청 토목과에 비치하고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.
3.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별도 개별 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서는 이 공고로 가름합니다.

1976. 10. 13

서울특별.시.장

<공 랑 개 요>

1. 사업장 위치 : 소공동
2. 사업의 종류와 명칭 : 소공동 가각정비공사
3. 사업의 규모 : 면적 19.9평
4. 사업의 시행자 : 서울특별시청
5.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 : 76.10.30 ~ 76.12.31
6.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: 별첨 토지조서
7.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 조 제 3 항의 관계인 주소 성명 : 다음

토 지 이 동 지 조 서

토지소재		원				현				소유자	
구	동	지번	지목	지적	등급	지번	지목	지적	등급	주 소	성 명
중	소공	86-10	대	0.3	89					86-1	권영대 외 2인
중	소공	86-1	대	18.8	89					86-1 신문로 1가 161	권영각 권영권
중	소공	86-9	대	0.8	89					'	'

◎ 서울특별시 공고제 247 호

도시계획시설(도로)실시계획공람공고

1. 건설부고시 제 177 호 (62.12.8)

로 고시된 남대문로 3 가 도로확장공사 구간내의 저촉되는 토지의 도시계획사업 실시 계획을 수립하고자 도시계획법 제 25 조 및 동법 제 34 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 일간 일반의 공람에 공한다

2. 관계도서는 중구청 토목과에 비치하고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.

1976. 10. 13

서울특별시
아 동 지 조 서

<공 랑 개 요>

1. 사업장 위치 : 남대문로 3 가
2. 사업의 종류와 명칭 : 남대문로 3 가 도로확장공사
3. 사업의 규모 : 가. B = 35 m
나. L = 50 m
4. 사업의 시행자 : 서울특별시장
5.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 : 76.10.30 ~ 77.12.31
6.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: 별첨 토지조서
7.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 조 제 3 항의 관계인 주소, 성명 : 다음

도지소재		원				현				소 유 자	
구	동	지번	지목	지적	등급	지번	지목	지적	등급	주 소	성 명
중	남대문 3 가	26-1	도로	13.6						북창동 102의2	양재완
"	"	26-2	"	14.6						한남동 726의74	최기홍
"	"	24-2	"	10.3						종로 2 가 50	전수용
"	"	24-1	"	10.3						남창동 2 의 3	기영약품 주식회사
"	"	23-1	"	14.7						"	"
"	"	25-1	"	18.5						25	김서기
"	"	27-1	"	29.1						27	조명숙

◎ 서울특별시공고제 250 호

서울특별시중소기업수출품생산
지정업체지정및취소공고

서울특별시중소기업수출품생산지정업체
지정요령 제 3 조 및 제 5 조의 규정에

의거 수출품 생산지정업체를 다음과
같이 지정 및 취소하였기 동 요령
제 4 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한다.

1976. 10.

서울특별시

1. 지정업체

지정번호	기업체명	대표자	소재지	수출품명	76년도 수출목표액	비고
485	(주)엘레판트	김경열	성동구성수동 2 가 19-15	가 방	\$ 723,440	

2. 지정취소업체

지정번호	기업체명	대표자	소재지	수출품명	취소사유
505	일진용단기 공업사	김성환	성북구 길음동 87-137	가스용단기	경기도로 이전

◎ 서울특별시공고제 251 호

도시계획시설(도로) 실시계획공람공고

1. 건설부고시 제 177 호 (62.12.8)

로 고시된 수문회관앞 도로확장공사
구간내의 저촉되는 토지의 도시계획
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고자 도시

계획법 제 25 조 및 동법 제 34
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로부터

14 일간 일반의 공람에 공한다.

2. 관계도서는 종로구청 토목과에

비치하고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
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.

<p>3.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에게는 별도 개별통지할 것 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 고로 가름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976.10. . 서울특별시 공 램 개 요</p> <p>1. 사업장위치 : 낙원동 279 의 1 - 경운 동 93 의 2 간</p>	<p>2. 사업의 종류와 명칭 : 수문회관앞 도로확장공사</p> <p>3. 사업의규모 : 가. B = 40m L = 400m</p> <p>4. 사업의 시행자 : 서울특별시</p> <p>5.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 : 76.10 - 77.12.31</p> <p>6.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: 별첨 토지조서</p> <p>7.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 수용법 제 4 조 제 3 항의 관계인 주소 설명 : 다음</p>
--	---

연번	지 번	지 목	지 적	소 유 자		비 고
				주 소	성 명	
1	낙원동 279-6	대	56.4	낙원동 279-1	김승현	
2	" 278-1	"	69.0		국 유	
3	" 280-2	"	34.4		김승현	
4	" 280-3	도로	4.1		서울시	
5	" 280-4	"	24.7		"	
6	경운동 47 - 15	대	6.3	경운동 47	임정순	
7	" 47 - 13	"	24.4	"	"	
8	" 47 - 14	"	0.4	"	김창배	
9	" 46	"	89.0		국 유	
10	" 47 - 12	"	13.8	경운동 47-7	김광순	

연번	지 번	지목	지 적	소 유 자		비 고
				주 소	성 명	
11	경운동 47-7	대	4.8		김 광 순	
12	" 47-16	"	2.3	경운동 47-16	윤 병 열	
13	" 47-11	"	16.0	" 47-11	창 용 식	
14	" 45-2	"	15.0	" 45-2	이 희 만	
15	" 45-1	"	42.0		국 유	
16	" 47-10	"	13.4		건 국 학 원	
17	" 48-2	"	19.0	경운동 48	이 순 길	
18	" 48-1	"	19.0	"	한 정 훈	
19	" 43	"	20.0		국 유	
20	" 44	"	18.0		"	
21	" 64-57	"	24.4		건 국 학 원	
22	" 49	"	39.3	경운동 49	김 태 순	
23	" 42	"	29.0		국 유	
24	" 42-1	"	3.9		"	
25	" 53-1	"	5.8		백 순 봉	
26	" 52-1	"	3.3		국 유	
27	" 53	"	14.0		백 순 봉	
28	" 52	"	24.0		국 유	
29	" 50	"	34.0		"	
30	" 54	"	16.0		"	
31	" 65-3	"	3.0		"	
32	" 51	"	9.0		"	
33	" 55	"	14.0	경운동 55	한 인 절	

연번	지번	지목	지적	소유자		비고
				주소	성명	
34	경운동 56	대	20.0		국유	
35	" 55-1	"	83.0		서울시	
36	" 63-15	"	15.8		국유	
37	" 58-2	"	12.0		"	
38	" 57	"	20.0		최병교	
39	" 63-14	"	2.4		국유	
40	" 62-5	"	5.0	경운동 71	민병도	
41	" 59	"	24.0	" 59	김동윤	
42	" 58-1	"	22.0		국유	
43	" 62-8	"	10.2	경운동 71	민병도	
44	" 62-3	"	22.0	"	"	
45	" 60	"	48.0	경운동 60	정해완	
46	" 62-6	"	31.8	" 74	민병도	
47	" 62-7	"	1.0	"	"	
48	" 61-1	"	17.0	경운동 61-1	조근형	
49	" 61-2	"	25.0	" 61-2	유일엽	
50	" 71	"	300.3	" 71	민병도	
51	" 72	"	21.0		국유	
52	" 74-2	"	52.0	경운동 74	성기덕 의 2인	
53	" 73	"	27.0		국유	
54	" 75	"	31.0		"	
55	" 88-3	"	301.0		천재교 단	
56	" 89-2	"	248		국유	

연번	지 번	지목	지 적	소 유 자		비 고
				주 소	성 명	
57	경운동 89-6	대	2.2		국 유	
58	" 90-17	"	250.8		"	
59	" 91-3	"	56.0		김광균	
60	" 91-7	"	90.9		"	
61	" 91-4	"	133.0		국 유	
62	" 96-8	"	14.1		"	
63	" 96-19	"	10.6		"	
64	" 92	"	62.0		이봉준	
65	" 96-4	"	56.5		박용준	
66	" 93-2	"	35.9		조진선	
67	" 96-3	"	37.1		차의양	
68	" 94-4	"	0.1		국 유	
69	윤니동 114-28	"	54.6	윤니동 114	김동현	
70	" 114-29	"	14.5	"	김승현	
71	" 114-30	"	129.7	"	이 청	
72	" 114-27	"	74.4		덕성학원	
73	경안동 2-5	"	30.3		서울시	
74	" 2-3	도로	7.0		"	
75	" 2-6	대	1.3		"	
76	" 2-7	"	0.5		"	

◎서울특별시공고제 252 호

주택개량재개발사업건축
계획공람공고

1. 건설부고시 제 145 호 (74.5.13) 제 136 호 (75.8.25)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 212 호 (76.9.4) 로 사업 실시 인가된 당시의 76 시행주택 개량 재개발사업지구인 아현 2 일부 옥수 3 및 미아 3 동 3 개구역에 대하여 주택개량 추진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 4 조 및 건축법 제 33 조의 2 규정에 따라 작성된 건축계획을 건축법 시행령 제 152 조제 3 항에 의거 공고일로 부터 14 일간 사업구역내 토지전물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공람합니다.

2. 상기건축 계획서는 당시 주택국 주택개량과에 비치되어 있으며 본 공고에 대한 개별서류 송달은 이 공고로 가름 합니다.

1976.10.

서울특별시장

◎강남구청공고제 40 호

청사이전공고

관하 잠원동 사무소를 다음과 같
이전하였기 공고한다.

1976.10.5

강남구청장

다 음

- 1. 전소제지 ; 서울특별시 강남구 잠원동 134-28
- 2. 이전장소 ; 서울특별시 강남구 반포동 92 부력 1-3
- 3. 이전일자 ; 76.10.5

예 규

◎서울특별시예규제 337 호

서울특별시체비지관리 및
처분규정중 개정규정

서울특별시 체비지관리 및 처분규정
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7 조중 "시유재산심의회"를 "공유
재산심의회"로 한다.

제 9 조 제 1 항중 "예산회계법시행령 제 88 조"를 "예산회계법 시행령 제 91 조"로 한다.

제 10 조 제 2 항중 "전항"을 "제 1 항"으로 제 3 항중 "전항"을 "제 2 항"으로 한다.

제 12 조 제 1 항중 제 3 호 내지 제 5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 2 항중 제 1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3. 용도가 시장으로 지정된 용지를 매각하고자 할 때에는 매수예정자 (이하 "매수자"라 한다)와 먼저 가계약 (별지 제 37 호서식) 을 체결하여야 한다. 가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시장시설보증금으로 매각금액의 1할 이상을 판할구청 장에게 예치토록 한다.

4. 본 계약은 가계약 체결후 매수자가 법인 등기부등본 및 시설보증금 납부필증 (별지 제 36 호서식) 과 제 1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체결하고 본 계약 (별지 제 38 호서식) 이 체결되면 계약내용을 산업국장 (참조 상정과장) 에게 통지한다.

5. 기타 용도로 지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제 3 호 및 제 4 호에 준하여 처리한다.

1. 2 회이상 공매에서 유찰된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자 할 때에는 재산공람대장을 비치하고 수시 공람케하되 매수 희망자가 있을 때에는 매수신청서 (별지매수신청서 별지제 33 호서식) 에 견적서 (별지 제 34 호서식) 및 견적보증금 납부서 (견적액의 1할 이상을 한국상업은행 태평로지점에 예치한 예치증) 첨부 제출케 한다.

2 인이상 견적서 제출자중 가장 가격 이상의 최고액을 견적하는 자에게 매각한다.

제 14 조 제 1 항 제 1 호중 "제 12 조 2 의 3 에"를 "제 12 조제 2 항제 3 호"에로 동항 제 4 호중 "각항"을 "각호"로 동조 제 2 항 제 2 호중 "전항"을 "제 1 호"로 동조 제 3 항제 2 호중 "전항"을 "제 1 호"로 동항제 2 호 다음에 3 호와

4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연부로 계약한자가 계약일로부터 60 일내에 대금을 일시로 전액 납부할 때는 일시불 계약에 준하여 2 할 공제한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.

4. 전 각항의 대금 징수순위는 연체이자, 이자, 매각대금 순위로 징수한다.

제 15 조 제 1 항 제 1 호 내지 제 3 호 를 다음과 같이하고 제 2 항중 "전항"을 "제 1 항"으로 한다.

1. 매수자가 실종 또는 사망하였을 때

2. 구획정리사업의 미완료로 인하여 소유권 이전 설치가 불가능할 때

3. 연부토지의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때

4. 제 8 조제 2 항제 2 호 나 특에 의 한 토지를 전 각호의 사유로 주무부장관의 명의변경 동의를 있을 때

부 칙

이 규정은 1976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사 령

◎ 1976.10. 3

영등포구 지방행정 양 강 선 주 사 보

지방행정주사에 추서함

◎ 1976.10: 4

관광과 지방행정 최 명 환 주 사

사망으로 그직을 변함.

◎ 1976.10.14

도봉구 지방행정 유 기 탁 주 사

기획담당관 근무를 명함.

아동과 지방행정 구 영 숙 주 사

도시가스사업소근무를 명함.

부녀과 아동과	지방행정 주 근무를 명함.	안 회 옥	아동병원 기	지방간호 원	오 명 래
서대문구 부녀과	지방행정 주 근무를 명함.	정 진 순	용산구보건소	지방약 무원	박 규 용
소녀직업 보도소	지방행정 주 근무를 명함.	주 무 경	강남구보건소	지방보 건원	김 덕 순
서대문구	지방행정 주사 근무를 명함.	이 종 애	서대문구 보건의	지방보 건사	오 창 섭
종로구 소녀직업 보도소	지방정보 주사 과전근무를 명함. (76.10.15 ~ 77.1.14)		동부병원	지방보 건사	정 필 성
특도수원지 사무소	지방토목 기사 근무를 명함.	안 회 태	관악구보건소	지방보 건사	김 의 구
지방공무원법제 66조의 규정에 의거 그직을 면함(정년퇴직)			서대문병원	지방지 적사	장 판 진
◎ 1976.10.15			관악구	지방지 적사	김 의 구
성동구 보건소	지방간호 기 근무를 명함	이 금 순	천호출장소	지방지 적사	장 판 진
도봉구 보건소	지방간호 기 근무를 명함	이 금 순	충구	지방지 적사	장 판 진
아동병원	지방간호 기 근무를 명함.	성 분 순	용산구	지방지 적사	장 판 진
중구 보건소	지방간호 기 근무를 명함.	성 분 순	영등포구	지방지 적기원	김 희 영
아동병원	지방간호 기 근무를 명함	신 승 수	동대문구	지방지 적기원	김 희 영
동대문구 보건소	지방간호 기 근무를 명함	신 승 수	동대문구	지방지 적기원	태 재 선
아동병원	지방간호 기 근무를 명함.	이 성 희	서대문구	지방지 적기원	태 재 선
용산구 보건소	지방간호 기 근무를 명함.	이 성 희	성북구	지방지 적기원	송 오 복
			관악구	지방지 적기원	송 오 복

동대문구 지방지적 기원	퇴 종 수	지방보건(X) 기원보시보 이 경 주
영등포구 근무를 명함.		초임호봉을 급함.
관악구 지적기원	윤 승 원	중부병원 근무를 명함.
세정과 근무를 명함.		지방보건(병리) 기원보시보 김경순
남부건설 지방토목 사업소 기사보	김 도 현	초임호봉을 급함.
동대문구 근무를 명함.		서대문병원 근무를 명함.
① 1976.10.18		지방보건(병리) 기원보시보 이종숙
지방보건연 구사보시보	우 수 회	초임호봉을 급함.
초임호봉을 급함.		종로보건소 근무를 명함.
보건연구소 근무를 명함.		지방보건(병리) 기원보시보 이윤남
지방약무 기원보시보	강 성 홍	초임호봉을 급함.
초임호봉을 급함.		성동보건소 근무를 명함.
동대문보건소 근무를 명함.		지방보건(병리) 기원보시보 장영숙
지방약무 기원보시보	김 상 대	초임호봉을 급함.
초임호봉을 급함.		도봉보건소 근무를 명함.
강남보건소 근무를 명함.		지방보건(병리) 기원보시보 주해리
지방약무 기원보시보	홍 승 휘	초임호봉을 급함.
초임호봉을 급함.		서대문병원 근무를 명함.
도봉보건소 근무를 명함		지방간호 기원보시보 박미홍
지방보건(X) 기원보시보	김 진 화	초임호봉을 급함.
초임호봉을 급함.		아동병원 근무를 명함.
성동보건소 근무를 명함.		지방간호 기원보시보 홍혜숙
		초임호봉을 급함.
		남부병원 근무를 명함.

지방간호 지원보시보	서 수 애	지방지적 지원보시보	이 병 수
초임호봉을 급함.		초임호봉을 급함.	
서대문병원근무를 명함.		동대문 근무를 명함.	
지방간호 지원보시보	김 명 자	지방지적 지원보시보	김 종 혁
초임호봉을 급함.		초임호봉을 급함.	
아동병원 근무를 명함.		도봉구 근무를 명함.	
지방간호 지원보시보	윤 용 수	지방지적 지원보시보	박 윤 환
초임호봉을 급함.		초임호봉을 급함.	
아동병원 근무를 명함.		은평출장소 근무를 명함.	
지방간호 지원보시보	이 난 자	지방지적 지원보시보	변 우 창
초임호봉을 급함.		초임호봉을 급함.	
아동병원 근무를 명함.		성북구 근무를 명함.	
지방간호 지원보시보	김 창 섭	지방지적 지원보시보	허 인 회
초임호봉을 급함.		초임호봉을 급함.	
아동병원 근무를 명함.		성동구 근무를 명함.	
지방지적 지원보시보	손 병 용	지방지적 지원보시보	성 덕 수
초임호봉을 급함.		초임호봉을 급함.	
관악구 근무를 명함.		관악구 근무를 명함.	
지방지적 지원보시보	백 순 흠	지방지적 지원보시보	임 재 훈
초임호봉을 급함.		초임호봉을 급함.	
영등포구 근무를 명함.		성북구 근무를 명함.	
지방지적 지원보시보	이 조 응	지방지적 지원보시보	이 진 성
초임호봉을 급함.		초임호봉을 급함.	
강남 근무를 명함.		천호출장소 근무를 명함.	

지방지적 기원보시보	이 문 주	지방지적 기원보시보	최 영 은
초임호봉을 급함.		초임호봉을 급함.	
성 북 구 근무를 명함.		중 구 근무를 명함.	
지방지적 기원보시보	이 형 원	지방지적 기원보시보	남 영 표
초임호봉을 급함.		초임호봉을 급함.	
관 악 구 근무를 명함.		마 포 구 근무를 명함.	
지방지적 기원보시보	김 명 학	지방지적 기원보시보	안 성 길
초임호봉을 급함.		초임호봉을 급함.	
종 모 구 근무를 명함.		강 남 구 근무를 명함.	
지방지적 기원보시보	최 윤 구	지방지적 기원보시보	윤 지 한
초임호봉을 급함.		초임호봉을 급함.	
중 구 근무를 명함.		강 남 구 근무를 명함.	
지방지적 기원보시보	최 인 영	지방지적 기원보시보	박 동 식
초임호봉을 급함.		초임호봉을 급함.	
성 동 구 근무를 명함.		서 대 분 구 근무를 명함.	

서울특별시장